

행 정 자 치 부

주 의 요 구

제 목 경력경쟁임용자 전보제한기간 미준수 등 부적정

기 관 명 부산광역시

내 용

1.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 미준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경력경쟁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4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고, 경력경쟁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에 전보하는 경우(「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2항제9호)에도 전보제한 및 전출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부산광역시에서는 경력경쟁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 등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하면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아래와 같이 경력경쟁임용 시험 합격자 중 10명을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 조치하였다.

직렬·직급	성명	최종 합격일	최초 임용일	최초 임용부서	현부서 전입일	현임용 부서
지방○○○○ ○급	○○○	2014-09-15	2014-10-27	○○군	2017-02-03	○○○구
지방○○○○ ○급	○○○	2014-09-15	2014-10-27	○○구	2017-02-03	○구

직렬·직급	성명	최종 합격일	최초 임용일	최초 임용부서	현부서 전입일	현임용 부서
지방○○○○ ○급	○○○	2014-09-15	2015-02-02	○구	2017-02-03	○○구
지방○○○○ ○급	○○○	2015-09-25	2016-01-01	○○○구	2017-02-03	○○구
지방○○○○ ○급	○○○	2015-09-25	2015-11-13	○○○○ 연구소	2016-02-03	○○구
지방○○○○ ○급	○○○	2015-09-25	2015-11-13	○○○○과	2016-02-03	○○군
지방○○○○ ○급	○○○	2015-09-25	2016-11-16	○○○○과	2017-02-03	○구
지방○○○○ ○급	○○○	2015-09-25	2016-08-10	○○구	2017-02-03	○○군
지방○○○○ ○급	○○○	2014-09-15	2016-03-16	○구	2016-11-16	○○군
지방○○ ○급	○○○	2014-11-21	2015-05-01	○○○ 사업본부	2016-08-03	○○구

2. 경력경쟁임용 합격 효력이 상실된 자의 공무원 임용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하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임용은 해당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를 보직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

용하려는 직급,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이 불가피한 사유, 경력경쟁임용 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사람이 갖춰야 할 학력·경력·연구실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추진할 경우 결원이 있거나 해당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를 보직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어 1년 이내에 결원이 발생할 직위 등에 대해서만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정 등을 거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함이 바람직함에도 기존 직류별 선발 방식 등을 그대로 적용해 시험방법을 결정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최종 합격일자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에 임용하지 못한 사례가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다.

구분	채용구분	직렬(직류)	성명	최종합격일	임용일	임용부서
2014-0회	자격증	○○○○ ○급 (○○○○사)	○○○	2014. 9. 15	2016. 3. 16	○구
2014-0회	자격증	○○○○ ○급 (○○○○사)	○○○	2014. 9. 15	2016. 2. 16	○○구
2015-0회	자격증	○○○○ ○급 (○○○○)	○○○	2015. 9. 25	2016. 11. 16	○○○○과
2015-0회	자격증	○○○○ ○급 (○○○○)	○○○	2015. 9. 25	2017. 2. 13	○○○○ 사업소
2015-0회	특성화고	○○ ○급 (○○○○)	○○○	2015. 12. 4	2017. 3. 13	○○○○ 사업소
2015-0회	특성화고	○○ ○급 (○○○○)	○○○	2015. 12. 4	2017. 3. 13	○○○○ 사업소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

[주의] 향후 경력경쟁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보제한 및 전출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경력경쟁시험등을 통하여 신규 공무원들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임용사유, 임용하려는 직급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등 인력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